

우수선수 선발 및 지원규정

제정 2016. 4. 1
경상북도 승인 2016. 4. 27
개정 2016. 12. 23
개정 2018. 8. 28
개정 2018. 12. 24
경상북도승인 2019. 1. 8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우수선수의 선발 및 훈련비 지원 등의 관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재원) 우수선수의 훈련비 지원은 본회예산에 책정된 금액과 특별협조금 및 후원금이 있을 시 이를 재원으로 한다.

제3조(대상자 추천 및 결정) ① 우수선수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추천은 회원종목 단체장의 추천에 의거 본회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·결정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. 단, 지급대상 인원은 본회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.<개정 '16.12.23>
② 중도 지원 요청자 및 지원자 변경은 사무처장이 결정한다.

제4조(심사위원회) 심사위원회는 본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맡는다.

제5조(추천기준) 우수선수 훈련지원금 지급대상자는 개인경기종목을 우선으로 선발하되 본도대표로 전국체전에 출전하여야 하며 추천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<개정 '18.12.24>

1. 국가대표(주니어 국가대표 포함) 선수인 자
2.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자
3.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자
4. <삭제 '18.12.24>
5. <삭제 '18.12.24>
6. <삭제 '18.12.24>

제6조(구비서류) 우수선수 지원대상자 추천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.

- 주민등록등본 1통
- 재학증명서 1통 (고·대학생)
- 재직증명서 1통 (실업팀소속)
- 경기실적증명서 1통
- 서약서

제7조(지원금지급 및 등급구분기준) <개정 '18.12.24>

①우수선수 지원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A등급 : 월 80만원~100만원

B등급 : 월 60만원~ 70만원

C등급 : 월 20만원~ 50만원

②등급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A등급 : 현, 국가대표로 선발되거나 전국체전에 우승한 자

2. B등급 가. 전국체전에서 입상한 자

나.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자

3. C등급 : 전국체전 8강 및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자

③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대상자 및 금액 조정을 할 수 있다.

④ 경북도 소속 선수로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입학할 희망하거나 재학중인 우수한 기량을 갖춘 선수로 경기력이 인정되는 선수에 대하여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지원금지급) ①지원금 지급기간은 1년(1월~12월)간으로 한다.

②다음의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및 지급중단을 할 수 있다.

1. 당해연도 전국체전 성적부진자(0점)에 대해서는 11,12월분 지급을 중단한다.<개정 '16.12.23.>

2. 지원 중 타시·도로 전출이 확정된 자는 지원액 전액을 환수 할 수 있다.

3. 본도체육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

4. 정당한 사유(국가대표로 국제대회참가, 부상 등)없이 전국 체전에 본도 대표로 불출전시 지원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.

5.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미제출자에 대해서 지원중단 및 지원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.

6.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중단이 필요하다고 결의할 때

제9조(선수관리) 본회지원자로 선정된 선수에 대하여 해당단체 또는 팀에서는 훈련 일지를 작성하여 매일 훈련 상황과 대회실적을 본회로 제출하여야하며 본회에서는 분기별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선수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 <개정 '18.12.24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12.23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8.28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12.24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